

2025년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 제6조의2
-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제14조의2

○ 금회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②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1차 연장)

□ (대상)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 3. 24.

** 금회 신청대상 혁신제품 현황 : '별첨' 참조

□ 혁신제품 1차연장 추진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 (~1월 중) [국토교통부]
- ② 서류검토 (1차 연장 부합여부 검토, ~2월 초) [국토교통부·정부합동]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3월 예정) [기획재정부]
- ④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3월 예정) [국토교통부]

③ 신청 자격요건 [1차 연장]

□ 1차 연장 신청대상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 목	세 부 내 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 (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구분	항 목	세 부 내 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적용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및 인증의 등록취소, 기간만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라	혁신제품 지정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4 신청 서류 [1차 연장]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 ^{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3-2 ^{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3-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 ^{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5	관련 특허 증빙자료(특허등록원부 및 명세서) * 지정신청 당시 제시한 특허에 대한 자료(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필수	-
6	경쟁업체참가자격등록증 *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확인 등(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 ☞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증빙자료에 물품식별번호 반드시 기재)
- ☞ 단, 제품을 공공기관 등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납품한 경우 증빙자료로 반드시 하단의 서류 전부 제출 (증빙자료에 물품식별번호 반드시 기재)
 - ①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의 확인을 받은 실적 확인서 (양식 '붙임3-1' 참조)
 - ②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계약서 및 내역서
 - ③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판매한 신청제품 관련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인수확인서 등 납품 관련 증빙자료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 공공기관 등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5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 (1차 연장)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5. 1. 24.(금) 18:00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드립니다.

□ 신청방법 : 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아래 유형별로 제출

구 분	지정유형	접수(신청)방법
(분야1) 연구개발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제출 (https://hub.kaia.re.kr 접속 → 기업참여 → 혁신제품 지정신청 게시판)
(분야2) 혁신성 인정제품	① 교통신기술	
	② 물류신기술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jbs92@ex.co.kr 또는 nam1793@ex.co.kr)
	③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분야3)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① 스마트챌린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제출 (https://hub.kaia.re.kr 접속 → 기업참여 → 혁신제품 지정신청 게시판)
	② 리빙랩(드론)	
	③ 리빙랩(ITS)	

□ 문 의 처

지정유형	평가기관(담당부서)	담당자	이메일(연락처)
(분야1) 우수연구개발 (분야2) ❶ 교통신기술 ❷ 물류신기술 (분야3) ❶ 스마트챌린지 ❷ 리빙랩(드론) ❸ 리빙랩(ITS)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김민혁 선임연구원	mhhkim07@kaia.re.kr (031-389-6371)
(분야2) ❸ 중소기업 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김선엽 차장	nam1793@ex.co.kr (054-811-2435)
		정범수 대리	jbs92@ex.co.kr (054-811-2434)

※ 전화에 앞서,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여 이메일로 먼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첨**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관련 신청대상 혁신제품 현황****□ 대상현황 : 총 3건**

○ 지정기간 : '22. 3. 25. ~ '25. 3. 24. (3년)

구분	혁 신 제 품 명	혁신기업	지정번호	지 정 분 류
1	100% 공장제작된 재사용 가능 어스앵커 전용 띠장	주식회사 제이피이엔씨	2022-021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업체)
2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한 일칼리수 중화장치	이노블루산업 (주)	2022-022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업체)
3	지능형 무선 위험(산사태 등) 감지 시스템	테크나인 주식회사	2022-023	스마트챌린지

※ 제품별 서류제출 기관

- 1~2번 제품(중소기업기술마켓 - SOC) → '한국도로공사'
- 3번 제품(스마트챌린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행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이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
	3	혁신제품 지정제품 중 우수조달제품(조달청)으로 지정된 경우 (물품식별번호 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 하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납품실적목록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 납품실적 작성 추가 필요시 행 추가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 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 단, 제품을 공공기관 등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납품**한 경우 증빙자료로 반드시 하단의 서류를 **전부 포함**하여 제출

- ①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의 확인을 받은 **실적 확인서** (양식 ‘붙임3-1’ 참조)
- ②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계약서 및 내역서**
- ③ 해당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판매한 신청제품 관련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인수확인서 등 납품 관련 증빙서류**

[붙임3-1]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납품한 경우 실적 확인서 (양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가 아닌 제품을 공공기관 등 공공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납품한 경우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확인서

※ 본 자료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납품 업체 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혁신 제품 납품 정보	혁신제품지정번호			
	제 품 명			
	모 델 명			
	물 품 분 류 번 호		물 품 식 별 번 호	
	납품대상기업명			
	납품대상 관련 공공기관 등 발주공사 계약명			
	납 품 장 소			
	납 품 기 간			
	납 품 수 량		납 품 금 액	

본 기관은 상기의 혁신제품의 납품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명 :

부서명 :

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발주공사 관리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기관장 직인으로 대체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연장타당성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 관 명	
	담당자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모델명)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물품식별번호)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구매부서명 :

구매부서장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국토교통부장관 귀하